

식품의약품안전처

주 의 요 구

제 목 병·의원 등 사용중단 반품 마약류 승인내역 보고 소홀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(이하 “마약류”라 한다)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마약류취급자¹³⁷⁾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.

또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시행일: 2012. 6. 27)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(약국)¹³⁸⁾ 또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(병·의원)¹³⁹⁾가 마약류를 마약류도매업자¹⁴⁰⁾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그 승인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, 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¹⁴¹⁾하도록 하고 있다.

137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마약류 취급 권한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

138)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139)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

140) 마약류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141) 식약처는 ‘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이내에 보고’ 토록 통보(식약청 00000과(현 0000과)-00000, 2012. 6. 11. 및 식약처 0000과-0000, 2016. 5. 25.)

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마약류 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도매업자를 관리하는 구(군)에 마약류 반품 승인 업무를 재위임¹⁴²⁾하였다.

따라서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는 마약류 반품 승인 내역을 구(군)으로 부터 보고받아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기종료 후 익월이내까지 빠짐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에서는 각 구(군)에서 반품 승인한 마약류 총 4,436건(2015년 2,100건, 2016년 2,336건) 중 174건의 승인 내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반품 승인내역을 보고하는 경우 승인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142) 부산광역시사무위임규칙 별표1(2012.12.26.시행)